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jeongseon.go.kr/>

제321호 2014. 4. 16. (수)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25호 정선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정선군 규칙 제1226호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11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4 - 35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2
- 정선군고시 제2014 - 36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6

규 칙

정선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14년 4월 16일

정선군 규칙 제1225호

정선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선군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법령”을 “법령이나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읍면장(실, 과 소장포함)”을 “읍·면장(실·과·소장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동호”를 “같은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공무원직무보상조례”에 의하여”를 “「정선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 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연2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 ② 직무제안은 읍·면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제안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안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것이 우선한다”를 “것을 우선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의 소속하에 정선군제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심사·채택·등급결정 및 시상

2. 창안의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창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5.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안심사)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 경우 제안 심사의 배점 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1. 창의성
2. 경제성 및 능률성
3. 실용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노력도
7. 완성도

제14조제2항 중 “범위안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심사의 결정)”을 “(채택여부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30일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를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내”를 “제14조에 따라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불채택제안의 재심사청구) 제15조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제1항 중 “행정향상등을”을 “행정향상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정금액 등의”를 “추정금액이”로 한다.

제17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등을”을 “제14조에 따라 채택된 창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로, “및 우량상”을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한다.

제18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도 에”를 “강원도에”로 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상: 특별승급(6급이하 공무원에 한한다)

제19조제2호 중 “우수상 및 우량상 :”를 “우수상 · 장려상:”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별상: 하나의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하나의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장려상: 하나의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노력상: 하나의 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제3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제안활성화 기여자 포상 등) 군수는 제안의 실시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제안의실기 및 평가”를 “제안의 실시 및 평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인정되 는”을 “인정되는”으로, “관계기관등”을 “관계기관 등”으로, “수정 보완”을 “수정 · 보완”으로 한다.

제23조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로, “실기”를 “실시”로 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제25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 수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제26조 중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이를 누설하여”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로 한다.

제2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심사 배점 기준표(제13조 관련)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	등 급					채점	비중	득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점 수	(1) 창 의 성		15	가	양	미	우	수		3	
	(2) 경 제 성 또는 능 른 성	경제성	15	300 만원 이하	3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상	8,000 만원 이상	2억 이상		3	
		능률성 (효과성)	15	가	양	미	우	수		3	
	(3) 실 용 성		15	가	양	미	우	수		3	
	(4) 적 용 범 위		10	가	양	미	우	수		2	
	(5) 계 속 성		10	가	양	미	우	수		2	
	(6) 노 력 도		10	가	양	미	우	수		1.5	
	(7) 완 성 도		10	가	양	미	우	수		1.5	
합 계			100								

비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는 경비절감 또는 재정이나 세입증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급에서 6점을 부여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자 유 정 제안서
☐ 지 정

(제1쪽)

제안 제목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위)	기여도(%)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여부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정선군공무원 제안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제안 내용 설명서 2. 예산 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 금액 산출 명세서 3.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① 제안 제목	
② 제안 종류	
③ 개 요	
④ 현황 및 문제점	
⑤ 개선 방안 (개선 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 성과)	
⑦ 조치사항	▪ 관련 규정 개정() ▪ 인력 추가 지원() ▪ 예산 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 기관 협의() ▪ 그 밖의 사항()

작성 방법

- ① 제안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 ② 제안 종류: 해당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 ③ 개요: 전체 제안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에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직무제안 추천서

정선군수 귀하

제 안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연 령	
제안자의 담당직무				
제안자의 공적개요				
직무제안의 내 용 개 요 창 의 성				
의 견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제안을 추천합니다.

직 위

직 인

부 서 명

성 명

실 인

[별지 제3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안 제목					
접수번호		제안 종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 명		소 속		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 제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인

2014년 4월 16일

정선군 규칙 제1226호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정선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폐
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4 - 35호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02-77(2002.4.8.)호로 결정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3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대상지역은 고한읍 5일장 개장 및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관광객 유입, 하이원리조트와 연계한 관광지 이용객의 증가로 고한시가지 인근 주차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고한 역전2 주차장을 확장·설치하여 고한 지역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 및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고한역 앞)

다. 면 적 : 7,843㎡ [기정 4,053㎡ ⇨ 7,843㎡ (증 3,790㎡)]

라.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마.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⑨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고한읍 고한리 274-64대 일원	44,736	증)3,973	48,709	강고 제77호 (‘02.4.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⑨	고한읍 고한리 62-14대 일원	48,709㎡	○ 고한시가지내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 도 모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4,736	증)3,973	48,709	100.0	
일반상업지역	42,382	-	42,382	78.7	
자연녹지지역	2,354	증)3,973	6,327	13.0	

※ 용도지역 변경은 없으며, 증감 사항은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변경 사항임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기정	7	1,079	2	71	4	954	1	54
	변경	8	1,110	2	71	4	954	2	85
중로	기정	2	660	1	18	1	642	-	-
	변경	2	660	1	18	1	642	-	-
소로	기정	5	419	1	53	3	312	1	54
	변경	6	450	1	53	3	312	2	85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	20	국지 도로	61 (18)	중로 2-7 고한리 274-14대	중로 3-8 고한리 66-20대	일반 도로	엘리트 학원	강고83호 (02.4.15)	
기정	중로	2	7	16	보조 간선 도로	1,953 (642)	8호 광장 고한리 274-181천	5호 광장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역	건고294호 (73.7.12)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도로	89 (53)	중로 2-7 고한리 62-9천	중로 3-8 고한리 274천	일반 도로	고한교	강고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167	소로 2-24 고한리 62-405도	중로 2-7 고한리 97-1대	일반 도로	고한 농협	강고2577호 (73.12.26)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398 (98)	소로 1-12 고한리 62-218도	중로 1-4 고한리 274-14대	일반 도로	-	강고300호 (03.12.13)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47	중로 2-7 고한리 98-9천	소로 2-23 고한리 62-394대	일반 도로	고한 농협	정선고제96호 (2010.7.9)	
기정	소로	3	31	6	국지 도로	54	소로 2-23 고한리 97-24대	소로 2-24 고한리 62-278도	일반 도로	-	강고2577호 (73.12.26)	
신설	소로	3	28	6	국지 도로	74 (31)	중로 2-7 고한리 97-4천	고한역 고한리 97-55천	일반 도로	-	정선고제29호 (2002.5.16)	일부 편입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3-28	◦ 도로편입 신설 - B=6m, L=31m	◦ 고한리2-4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에 따른 소로3-28호선 일부 편입으로 노선 신설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⑩	고한 역전 2주차장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4,053	증)3,790	7,843	정선고제29호 (02.5.1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⑩	고한 역전 2주차장	◦ 주차장 구역 확장 : 4,053㎡ ⇒ 7,843㎡ (증)3,790㎡)	◦ 고한시가지내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관리 도모를 위하여 주차장 확장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고한리2-4 가구 및 획지의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기정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증감(㎡)	
기정	E1	12,352	고한읍 고한리 62-70번지 일원	12,352	-	
기정	E2	1,061	고한읍 고한리 97-35번지 일원	1,061	-	
기정	E3	3,073	고한읍 고한리 62-23번지 일원	3,073	-	
기정	E4	3,304	고한읍 고한리 62-26번지 일원	3,304	-	
기정	E5	1,480	고한읍 고한리 274-63번지 일원	1,480	-	
변경	E6	4,053	고한읍 고한리 274-64번지 일원	7,843	증)3,790	주차장 확장에 따른 면적변경
기정	E7	770	고한읍 고한리 274-226번지 일원	770	-	
기정	E8	890	고한읍 고한리 54-3번지 일원	890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면참조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없음

정선군고시 제2014 - 36호

정선 군관리계획(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09-285(2009.8.21.)호로 결정 고시된 정선 군관리계획(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제9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4월 3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사북11리 동원아파트 철거에 따른 이주주민 주거공간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A3블럭)에 단독주택(5동)신축에 따라, 기 결정된 진출입 도로인 소로2-18호선을 주변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도로 구배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여건 확보 및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576번지 일원

다. 면 적 : 636,670㎡(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마. 정선 군관리계획(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사북직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9	사북직전 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542번지 일원	636,670	-	636,670	강고제285호 (09.8.21)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획관리지역	636,670	-	636,670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331	직전리 572	직전리 613	일반 도로	-	강고 제285호 (09.8.21)	
변경	소로	2	18	8	국지 도로	402	직전리 572	직전리 576	일반 도로	-	금회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18	소로 2-18	노선변경 - L=331m → 402m (증) 71m)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이주주민단독주택 입지로 진.출입도로(소로 2-18호선)를 자연지형을 고려한 구매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교통여건을 확보하여 주민민원 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4	녹지	경관 녹지	직전리 576번지 일원	11,224	감)1,145	10,079	강고제285호 (09.8.21)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4	경관 녹지	면적축소 - A=11,224㎡→10,079㎡ (감)1,145㎡)	근린생활시설용지내 이주주민단독주택 입지로 진.출입도로(소로 2-18호선)를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도로구매율을 최소화할 수 있게 계획하고자 경관녹지 면적 축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기정면적 (㎡)	가 구		증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계	636,670		636,670	-	
A	주거용지	333,775	사북읍 직전리 372번지 일원	334,355	증) 580	
B	상업용지	15,915	사북읍 직전리 548번지 일원	15,915	-	변경없음
C	녹지용지	146,594	사북읍 직전리 613번지 일원	145,449	감) 1,145	
D	공공시설용지	140,386	사북읍 직전리 541번지 일원	140,951	증) 565	

2)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도 면 번 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A	A3-4	근린생활시설용 지	19,101	사북읍 직전리 572번지 일원	14,533	감) 4,568	
	A3-5	근린생활시설용 지	19,073	사북읍 직전리 569번지 일원	24,225	증) 5,152	
	A3-8	근린생활시설용 지	11,463	사북읍 직전리 592번지 일원	11,459	감) 4	
C	C1-14	경관녹지	11,224	사북읍 직전리 576번지 일원	10,079	감) 1,145	
D	D1-1	도 로	128,191	사북읍 직전리 529-6번지 일원	128,756	증) 565	

※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의 획지는 지적경계에 의한 필지를 기준으로 하되 과소 및 과대 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병 또는 분할 유도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도면참조

마.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변경없음